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2025. 2.

제 안 자: 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2202731	김상훈의원	2024.8.12.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2024.11.1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
2203535	윤한홍의원	2024.9.2.	
2203798	이강일의원	2024.9.9.	
2204628	민병덕의원	2024.10.10.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직접 회부 (2024.12.3.)
2206774	김상훈의원	2024.12.20.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24.2.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

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4.12.3.)와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2.24.)에서 위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22회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2025.2.24.)는 위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고질적인 부당특약 설정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임.

부당특약 설정 시 원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등이 가능하나 계약 당사자 간 민사상 효력은 여전히 유효해 부당특약 이행 의무가 잔존 하고, 원사업자를 상대로 별도의 사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수급사업자 에게 큰 부담이 되는 등 수급사업자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하도급계약의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되, 일부의 경우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함으로써 부당한 특약이 설정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거래 안정성 확보와 수급사업자의 신 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 보존 의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양측 모두에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현행법의 취지

를 고려할 때, 서류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이유로 실제로 수급사업자가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하였음 에도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음.

이에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수급사업 자를 제외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3조 의4제3항 신설 및 안 제25조의3).

법률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제2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한 원사업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한 특약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
	른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
	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
	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u>무효로 한다.</u>
제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	제25조의3(과징금) ①
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발주자 원사업	
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	
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	
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3조제12항을 위반하여 서	2
류를 보존하지 <u>아니한 자</u> 또	아니한
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u>원사업자</u>